

4 (第125回-運營第1次)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 기 : 2001. 3. 13(화) ~ 3. 27(화), 15일간

□의사일정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3. 13(화) 14 : 00	※ 개최식 1. 제1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4(수)	○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 관한질문(1일차)	
3. 15(목)	○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 관한질문(2일차) ※ 본회의 휴회결의 : 3. 16 ~ 3. 26(11일간)	
3. 16(금)~ 3. 26(월)	○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휴회
3. 27(화) 14 : 00	1. 안건처리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느냐, 의원 각자가 의원 윤리강령, 의원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민의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장(埋葬)중심의 장묘문화가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묘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의 의식 전환, 장묘제도의 개선, 장묘시설의 정비 및 확충, 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관련 각종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년월일 2001. 3. 13  
발 의 자 : 차 성 환 위원  
찬 성 자 : 이 해 식 위원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이유

지구촌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 대회운영, 시민참여운동 등 제반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2002년 월드컵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